



## 産業環境情報

### - 기후변화협약상 공동이행제도의 활용방안 -

정용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註 : 상공회의소의 산업환경정보에 게재된 자료인용)

#### ■ 공동이행제조의 도입배경

'97년 12월 개최된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 일본, EU 등 Annex I 국가들은 「2008~2012년」 까지 온실가스를 '90년대 대비 평균 5.2%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교토의정서 부속서 B에 명문화 되었다. 그러나 선진국들간의 협상 결과 다분히 정치적 합의로 이루어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각국의 경제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만약 각국이 자국내에서의 노력만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저감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선진국들간의 배출권거래를 허용하는 새로운 저감수단을 주장하였으며,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상당부분 양보함으로써 교토의정서는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등 기후변화협약 의무이행을 위한 새로운 수단(Flexibility Mechanism)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의정서의 공약의무 이행에 시장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이 보다 비용효과적(Cost Effectiveness)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 공동이행제조의 개념과 현안문제

##### ○ 공동이행제조란?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거나 양국이 인정하는 법인(legal entity)간 공

동사업의 결과, B국에서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량을 A국의 배출저감 실적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 ○ 공동이행제조의 현안문제

교토의정서 제6조는 선진국이 의정서 제3조에 규정된 감축의무의 달성을 공동이행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분을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동이행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이 의정서 제6조제1항의 기준과 향후 당사국 총회가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당사국 총회가 추후 의정서 제6조제2항에 따라 허가, 인증기관 지정과 검증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공동이행사업의 인증권 소재가 불분명하다.

#### ■ 기후변화협약과 공동이행제도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교토의정서에 의해 확정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오는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 개도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부담이나 자발적 감축노력을 과학적, 사회적 필연성에 근거하여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차기 총회에서는 의정서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온실가스 흡수원의 측정방법, 공동이행의 가이드라인, 배출권거래의 방법등을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공동이행제도는 개도국의 보상문제와 맞물려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개도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소재를 공동이행 등에서 얻어지는 크레딧의 인정과 연계하여 선진국의 보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보상은 공동이행을 포함한 새로운 의무이행 수단이 정착된 후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 ■ 공동이행제도의 활용방안



\$

사업보다 수익성이 높을 것이다.

세계은행도 크레딧의 가격상승을 예상(세계은행의 보고서는 이산화탄소 가격이 최초 톤당 10-20\$에서 배출권 시장이 성숙되는 2000년대에는 톤당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여 공동이행제도에 여러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PCF(Protp-type Carbon-offset Fund)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동이행사업은 21세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거래시장의 조기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배출권제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협상의 진전방향과 속도에 맞추어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이행사업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각산업별로 시장조사와 함께 세계은행등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기금에 참여할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